내수 활성화 방안

-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·민생 개선대책 -

2017. 2. 23.



순 서

I. 최근 경제동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1. 주요 동향1
2. 소비 둔화 원인2
Ⅱ. 기본방향4
Ⅲ. 추 진과제
1. 소비심리 회복5
2. 가계소득 확충8
3. 가계·자영업 부담 경감······11
〈첨부〉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20

Ⅰ. 최근 경제 동향

◇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, 소비심리 위축, 고용문화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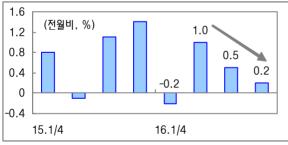
1. 주요 동향

① (내수) 소비·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둔화 흐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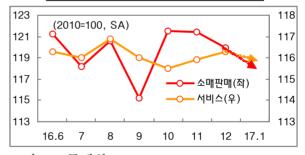
- **민간소비**는 심리 위축으로 **소매판매 부진**이 지속되는 가운데, 청탁금지법, 부동산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**서비스업**도 **둔화**
 - * CSI: ('16.10) 102.0 (11) 95.7 (12) 94.1 ('17.1) 93.3('09.3월 이후 최저 수준)
 - 고용 증가세 약화, 체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소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
- 설비투자는 수출회복으로 그간의 **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**이나 건설투자는 건축허가 감소, SOC투자 축소 등으로 조정 예상
 - * 설비(전월비, %) : ('16.10)0.8 (11)5.9 (12)3.4, 건설 : ('16.10)△0.2 (11)6.3 (12)△1.8

민간소비 추이

소매판매 및 서비스업 추이



* 자료 : 한국은행



* 자료 : 통계청

② (수출)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 상존

- 수출은 IT 업황 개선, 유가 회복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이 있으나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리스크 잠재
 - * 수출(전년동월비, %) : ('16.10) △3.2 (11) 2.3 (12) 6.3 ('17.1) 11.2
- □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간 경기를 뒷받침하던 소비 등 내수 부진 지속시 1/4분기 예상 성장경로 하회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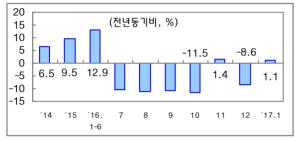
2. 소비 둔화 원인

① [심리위축] 대내외 불확실성,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소비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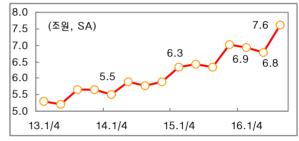
- 정국 불안, 美 新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등 내구재 중심으로 소매판매 둔화
 - 국내 관광·여가 서비스업도 심리 위축으로 둔화되는 반면, 내국인의 해외여행 등 국외소비는 증가
 - * 여가 서비스업(전년동월비, %) : ('16.10) 0.6 (11) 0.9 (12) △1.6 숙박 서비스업 ('16.10) △4.5 (11) △5.4 (12) △3.5

자동차 판매 추이

거주자 국외소비 추이



* 자료 : 자동차산업협회



* 자료 : 한국은행

-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점·주점 등 관련 서비스업 매출·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등 설명절 선물수요도 위축
 - * 법 시행 이후 임시직 근로자 중심으로 숙박음식업 고용도 조정되는 모습 - 임시직 숙박음식업 취업자증감(전년비) 만명): (161~9)20 (10)0.4 (11)△1.9 (12)△2.2 (17.1)△5.1

청탁금지법 관련 서비스업생산

설 선물 판매 동향

전년동월비(%)	7~9월	10월	11월	12월
음식점업	0.6	△1.7	△3.5	△3.6
주점	△5.8	△6.5	△8.9	△8.5

* 자료: 통계청

전년동기비(%)	롯데百	샌畑	현대百	이마트
추석('16.9)	8.6	△4.2	△3.1	1.4
설('17.1)	△1.1	△3.8	△12.5	△4.8

* 자료: 업계, 추석은 당일 1주전~4주전 기준, 설날은 당일 ~ 당일 4주전 기준

② (소득여건 약화) 고용 부진,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도 소비회복에 부담

- 경기둔화,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제조업 고용부진이 심화되는
 등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되며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
 - 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14) 53.3 ('15) 33.7 ('16) 29.9 ('17.1) 24.3
 - * 가계소득(전년비, %) : ('14) 3.4 ('15) 1.6 ('16.1/4) 0.8 (2/4) 0.8 (3/4) 0.7

○ 특히, 임시·일용직 고용 위축, 영세자영업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

1분위 가구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

(전년비)	′13	′14	′15	′16.1/4	2/4	3/4
1분위 소득증가율(%)	2.3	5.6	4.9	△2.9	△ 6.0	△5.9
근로소득 증가율	△1.4	5.5	4.6	△7.4	△8.6	△12.4
사업소득 증가율	0.7	6.4	1.3	△17.7	△23.0	△12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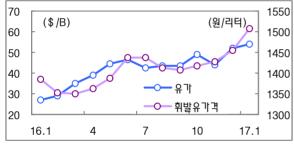
* 자료 : 통계청

③ (지출여력 약화) 생활물가 및 생계비 증가도 소비여력을 제한

- '16.4/4분기 이후 유가 상승,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으로 생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저하
 - * 소비자물가(전년비, %) : ('16.9) 1.3 (10) 1.5 (11) 1.5 (12) 1.3 ('17.1) 2.0

유가 및 휘발유가격 추이

<u>신선식품 및 소비자물가 추이</u>



* 자료 : 석유협회, 오피넷



* 자료 : 통계청

- 주거비·의료비 등 **주요 생계비 증가**가 **가계지출에 부담**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특히 **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확대**되는 모습
 - * 전체가구 소득·지출('16.1/4~3/4, 전년비, %): (소득)0.8 (실주거비)7.0 (외래의료비)3.6

가처분 소득 중 주요 생계비 비중(1분위 가구)

(%)	주요생계비	식료품	주거·수도	보건·의료	교육비	교통비	통신비
′15.1/4~3/4	73.1	21.4	17.7	11.0	6.3	9.8	6.9
′16.1/4~3/4	76.0	22.1	18.7	11.8	6.7	9.8	6.9
증감(%p)	+ 2.9	+0.7	+1.0	+0.8	+0.4	+0	+0

* 자료 : 통계청

-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확대 예상
- * 가계대출금리(%, 한은): ('16.7)2.96 (8)2.95 (9)3.03 (10)3.08 (11)3.20 (12)3.29

Ⅱ. 기본방향

- ◇ 우리경제 회복세를 제약하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
 - 1/4분기 역대 최고수준(31%) 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,
 - 이 위축된 경제심리 반전, 지출여력 확대를 위해 즉각적으로 내수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를 발굴・신속 추진
 - * 일자리 확충, 복지확대 등 구조적 과제는 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연중 추진

지출 여력을 실제 소비로 연결

소비 심리 회복

소비 분위기 조성 · "가족과 함께하는 날" 시행

·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 지원

관광 활성화 · 봄 여행주간 운영

· 국내 레저산업 육성

적극적 거시정책 ·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

가계소득 확충, 생계비 등 부담 완화로 지출여력 확충

소비 활성화

가계

소득

확충

고용위축 대응

·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

·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

임금체불 방지 등

· 체당금 지급기간 단축

· 소액 체당금 상한 인상

저소득층 지원강화 ·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확대

· 근로·자녀장려세제 대상 확대

부담 경감

가계 생계비 경감 · 주거비·의료비·교육비·통신비 등

핵심 생계비 경감

자영업자부담경감 · 부채부담 완화 및 상생협력 확대

중소기업 애로 완화 · 금리상승, 환율변동성 확대,

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애로 완화

Ⅲ. 추진과제

1 소비심리 회복

◇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'가족과 함께하는 날' 도입 등건전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・레저 활성화

1. 소비 분위기 조성

□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청탁금지법 영향업종 지원

- ①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'가족과 함께하는 날'을 지정하고,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* 유도
 - * 예) 월~목요일중 30분씩 초과근무하고 '가족과 함께하는 날'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하여 전체 근로시간 유지
 - <u>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</u> 마련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
- ②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'17년말까지 확대(30→40%)
- ③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·화훼 등 소비위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포장상품·신상품 개발, '1Table 1Flower' 운동 등 수요보완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
 - 음식점·화훼업·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노력 병행
 - ◇ (자금) <u>청탁금지법 영향 소상공인 전용자금(800억원)을 조성하여</u>
 <u>운영자금 저리융자(업체당 7천만원 한도, 대출금리 2.39%)</u>
 - **지역신보 기존 보증 만기연장**^① 및 **특례보증**(1천억원)^② 시행
 - ①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원금 상환조건 없이 만기연장(1년)
 - ② (특례보증 한도)업체당 7천만원, (보증료율)0.2%p내외 인하, (보증율)85→100%
 - ◇ (세정)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(3월), 종합 소득세(5월), 부가가치세(4·7월)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

2. 관광 활성화

□ 봄 여행주간 확대 실시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유도

- 금년도 **봄 여행주간을 2일 확대**('16.5.1~14일 → '17.4.29~5.14일)
- 봄 여행주간 중 숙박·교통 등 여행편의를 대폭 제고하고, 다양한 볼거리·즐길거리 발굴(4월초 세부계획 발표)
 - 5대 관광열차(^①중부내륙관광열차 및 백두대간협곡열차, ^②남도해양열차, ^③평화열차, ^④정선아리랑열차, ^⑤서해금빛열차) 주중 30% 할인
 - 지역축제와 연계한 봄 여행 특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
 - <u>봄철 휴가사용 및 각급학교 재량휴업, 국내 현장학습 권장</u> (문화재 탐방, 지역 특산물 조사·견학 등을 통해 국내여행 유도)

② 여행비용 경감, 연령별 특화상품 확대로 국내 관광여건 개선

- ① <u>호텔·콘도가 객실 요금을 현행가 대비 10% 이상 인하하는 경우</u>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(건물분)를 최대 30% 경감('17년 한시)
- ②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국내 여행시 할인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추진
- ③ <u>청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</u> 있는 '내일로' 이용대상 확대(만 25세→29세 이하, ~'17년말)

③ 비자·교통 관련 애로 해소 등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

① 중국・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'17년말까지 면제

- ② 단체→개별관광객 중심으로의 여행형태 변화에 적극 대응
 - <u>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발급절차를</u> 간소화*하고,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상 확대** 추진
 - * 예) 5년내 2회 이상 입국자에 대해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절차 생략 등
 - ** 예) 자동출입국심사대 확충 후 제주 외 인천, 부산 등 지역 입국 외국인으로 확대
 - 「<u>허니문 코리아 비자」를 신설하여 신혼여행 등을 위해 방한하는</u> 중국인 신혼부부^{*}에게 전자비자 발급,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
 - * '14년 기준 중국 신혼부부는 1,300만쌍이며 한국에 웨딩사진 여행을 다녀온 신혼부부는 7,000여쌍
- ③ 고속·시외버스 등에 다국어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교통 예약앱 외국어 버전 개발(코레일톡 2월, SRT 3월 착수)

④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국내 레저산업 육성

- 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국내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등 방안 마련(4월)
 - ※ 구체적 내용은 국민·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
- ②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접안가능시설을 확대(6→11개)하고 평창 올림픽 수요 대비 속초항에 대형 크루즈(10만톤급)용 입항 시설 보강

3.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소비회복 뒷받침

□ 기금확대 등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

- 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서민주거안정, 중소기업 지원 등 중심으로 기금지출액을 2.2조원 증액
 - * 주택기금(+1.5조원), 중진기금(+0.4조원) 등
- ② '16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·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를
 0.8조원 확대(당초 예상 3조원 수준 → 3.8조원)

2 가계소득 확충

◇ 구조조정 업종,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저소득층・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

1. 고용위축 대응

①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업안전망 확충

- ① (구조조정) <u>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</u> 으로 **지정 추진***하여 필수인력 유지 등을 위한 지원 강화**
 - * 2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** 고용유지지원금 확대(휴업·휴직수당의 1/2→2/3, 상한액 4.6→6만원),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,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 인상 등
 -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하는 기업·근로자 지원을 위해 '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' 요건 완화
 - * 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·훈련 요건 완화(3→1개월)
 - ②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 단축(90→30일)
- ② (실업 안전망) 실업자 생계보호와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(4.3만원→5만원, '17.4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)

② 청년층 취업애로 완화 및 실업난에 따른 생계불안 지원 확대

- ① (취업 지원) 그간의 청년 고용대책을 점검하고 미흡과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보완방안 마련(3월)
 - **졸업후 취업**을 원하는 **일반계 고등학생**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취업특강*·진로상담·직업훈련** 등 **고용서비스 지원방안** 마련(3월)
 - * 고용센터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청년고용정책 교육홍보
 - ** 폴리텍, 민간훈련기관 등 위탁 직업교육 대상 확대('16년 6,728→'17년 1만명)
- ② (생계지원) 청년·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 확대 (800→1,200만원) 및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(2,000만원 한도)
 - <u>민간(청년희망재단 등)과 협업하여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</u>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대상 생계비 지원 방안 마련(3월)

2. 임금체불 방지 및 취약근로자 처우개선

① 체불임금 축소를 위해 예방·감독·청산 등 단계별 지원 확대

- ① (예방·감독)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·단속 강화
 - 상습체불 사업주는 체불금 상당의 부가금 부과, <u>악의적 체불</u> 사업주는 근로자·사업주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(근로기준법 개정)
 -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활용하여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감독·체불 예방(스마트근로감독시스템 개선)
- ② (청산) <u>재판상 도산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절차를 개선*하여</u> 체당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약 70→30일로 단축
 - * (현행) 법원의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 체당금 지급 (개선) 고용주가 파산 및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날 이후 지급
 - <u>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당금을</u>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을 300→400만원으로 인상*
 - * 사업주 재산정보를 통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병행 추진
 - <u>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(2.7~4.2%→2.2~3.7%) 및</u> 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(2.5→2.0%)를 0.5%p 인하

② 감정노동자, 비정규직 등 권리보호 강화 및 처우개선

- ① (고객응대 근로자) 고객으로부터 폭언·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건강장해 예방 등 조치* 요구 권리 부여(산업안전보건법 개정)
 - * ①고객의 폭언·폭행,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의 건강장해 예방, ②건강장해 발생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, ③상기조치 요구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
- ② (특수고용형태 종사자) <u>텔레마케터, 대출모집인, 대리기사 등의</u> 처우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* 마련(7월)
 - * 현재 건설기계운송 종사자, 보험모집인 등 9개 직종 적용 → 12개 직종으로 확대
 -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(배달대행원)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확산(3월)
 - *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(고시)에 배달대행원 포함

- ③ (하청·파견 근로자) 원청업체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· 파견 근로자 복지 지원시 원금의 20%까지 사용 허용 검토(5월)
- ④ (산업재해 근로자 등) <u>산재 근로자 및 가족, 유족 등에 대한</u>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인하(2.0→1.5%)

3. 저소득층 지원 강화

① (생계 안정) 저소득 1~2인가구 지원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축소

- ① (생계급여) <u>1~2인가구 지원 확대,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</u>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(7월)
- ② (긴급복지)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중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
- ③ (근로장려세제)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하여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~30세 이상으로 확대(조특법 개정)
- ④ (자녀장려세제)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 요건 중 재산기준을 1.4→2억원 미만 가구로 완화(조특법 개정)
- ⑤ (사각지대 축소) <u>빅데이터* 등을 활용,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</u> 하여 복지지원 대상(민간·공공포함)을 6만명 신규발굴
 - * (현행) 단전·단수 등 23개 데이터 → (개선) 금융채무 불이행 주택임대료 체납 추가

② (자립 지원)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

- ①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의 **탈수급 지원**을 위해 **희망** 키움통장(I)* 가입 대상을 확대
 - *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시 월평균 33만원 정부 매칭지원(3년내 탈수급 조건)
 - 월 저축액 선택폭을 확대(10만원 →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)하고 가입요건도 완화(현행은 기준중위소득 24% 이상만 가입 허용)
- ② <u>저소득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**디딤씨앗통장* 가입연령 제한 완화**(기초수급가정 가입대상을 만12~13세→ 만12~17세로 확대)</u>
 - * 후원자 도움 등으로 매월 일정액 저축시 정부가 월 4만원까지 1:1 매칭지원

3 가계·자영업 부담 경감

- ◇ 주거비·의료비·교육비·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
- ◇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・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

1. 가계 생계비 경감

① (주거비) 임차가구 및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

【임차가구 지원 강화】

- ①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% 이상을 봄·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('16년은 40% 공급)
 - '17년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7천호 확대(2.7→3.4만호)하고 확대 물량에 대해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 실시
- ② <u>전세자금대출(주택기금 버팀목 대출)</u> <u>한도를 1.2→1.3억원으로 확대</u> (수도권)하고 <u>월세대출(주택기금)</u> <u>한도도</u> 월 30→40만원으로 상향
- ③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)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 확대*
 - * (현행) HUG 홈페이지, 6개 위탁은행 등에서 가입 가능 → (개선)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입신청 대행
 - <u>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</u>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

【청년층 주거지원 확대】

- ① <u>청년·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('17년 2만호 계획)를 상반기중</u> 1만호 이상 조기 모집
 - * '16년에는 총 1만호 중 상반기에 3,500호, 하반기 6,500호 모집
- ② <u>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</u> <u>차등화*하고,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1→2회로 확대</u>
 - * (현행) 호당 0.8억원(수도권) → (개선) 2인 거주 1.2억원, 3인 거주 1.5억원

- ③ 대학생 주거개선을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
 - <u>대학인근 주택을 리모델링*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</u> 공급하고 LH·대학이 입주자 선정, 입·퇴거 등 공동 관리
 - *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시 대학인근 주택 우대 등
 - <u>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등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*</u> 하는 경우 **융자**(주택기금) 및 **보증**(HUG) 지원
 - * 예) 대학생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조합원 출자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, 임차하여 조합원에게 일정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경우 등
 - <u>행복기숙사의 저소득층·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 입사</u> 비율을 확대*하고 기숙사비 인하(50%) 대상도 확대**
 - * 수용인원의 15→30%, ** 수용인원의 3→5%
- ④ <u>청년리츠의 금년도 주택 매입을 조기 시행(매입공고 10→3월,</u> 2천호)하고 매입주택을 **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** 추진

② (의료비)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

- 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
 -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·자동차 부과기준 완화를 통해 연간 9천억원~2.3조원 부담 경감
 -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 및 <u>노인</u>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* 개편방안 마련
 - * 진료비 총액이 15,000원 이하시에는 1,500원 정액을 부담하나 15,000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30%를 부담하여 부담 급증(예 : 진료비가 16,000원시 4,800원 부담)
- ② <u>징수가능성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* 및 미성년자</u> <u>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**(87만세대, 약 1,200억원 대상)</u>
 - * 소득·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** 징수가능성 여부 검토 후 결손
- ③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하더라도,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* 완화 검토(4월)
 - *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시 최대 2년간 지역가입자 전환 유예

③ (교육비) 학자금대출 및 사교육비·교복비 등 부담 경감

【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】

- 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**의무상환기간 중 실직·폐업** 뿐 아니라 **육아휴직**을 하는 경우에도 **1개년 부과분 상환 유예**
 - 전년도의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취업후상화 학자금의 상환방식 다양화
- ② 재학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및 청년층 신용유의자 연체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산 추진*
 - * 한국장학재단과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참여지자체(광역·기초) 확대(이자지원 : 19개→ 23개, 연체이자 지원: 3→7개), 지원요건·수준은 참여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적용

【사교육비 경감】

- ①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교습비 미게시·초과징수· 과대광고 등 점검(3월), 불법·편법 운영학원 교습정지 등 처벌 강화
- ②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*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(2월, 8월)하고 고액원비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배제
 - *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

【교복비·교과서 등 비용경감】

- ① <u>전국 시·도 교육감 간담회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</u> 사업 참여 시·도 교육청*을 전국으로 확대 유도
 - *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지원 교육청(현재 5개) : 서울, 울산, 세종, 충북, 전북
- ② 교과서 가격책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·업계 등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('17.下)

④ (유류·교통비) 유류세환급 확대 및 출퇴근비용 경감

【유류비용 경감】

- ① <u>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,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</u> <u>경차 유류세 환급* 한도를 연 10→20만원으로 확대</u>
 - * 1천CC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휘발유·경유 리터당 250원, LPG는 전액 환급
- ②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셀프주유소 전환 인센티브* 지원
 - * 알뜰 시설개선자금(6.4억원)을 활용하여 알뜰 · 셀프로 신규전환시 우선 지원

【출퇴근 등 교통애로 완화】

- ① 고속철도(KTX·SRT) 조기예약시 파격적인 할인혜택 제공
 - * 예) 25일전 예약시 30~50%, 15일전 예약시 20~30% 할인 등
 - ** '17.8월부터 운행개시 예정인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병행하여 추진
- ②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(M-버스) 운영을 확대*하고, 후순위 정류장 고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좌석예약제 도입
 - * 송도·동탄 등 수도권 4개 노선 신설, <u>인천 구월·고양 원당 등에 추가 도입 추진(17.上)</u>
- ③ 버스운행 지역·시간·횟수를 모바일앱을 통해 수요자 요청시 탄력 조정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업의 도시운행 허용* 및 서비스 다양화**
 - *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농촌,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
 - ** 공항·고속철도역 연계, 관광시설 연계 콜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추진
- ④ 고속·시외버스 탑승 안전을 위해 영·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가능한 3점식 안전벨트 도입을 권장하고, 영·유아용 카시트 렌탈 서비스 제공(시범사업 후 확산, '17.下)
- ⑤ <u>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주차단위구획 크기(現 일반형</u> 주차구획: 너비2.3m, 길이 5.0m 이상)를 **5~10% 확대**
 - *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5 (통신비) 알뜰폰 활성화. 정보제공 확대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

- ① <u>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</u>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* 완화(3월)
 - * 현재 1회당 경품가액 총합(3,000만원), 개별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(300만원) 등 규율
- ② 이동통신사(모바일서비스)와 케이블사업자(방송·인터넷)간 결합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등결합상품 출시(2월말)
- ③ <u>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,</u>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 개시(6월) 등 알뜰폰 유통망 확대
- ④ <u>통신요금 정보포털을 통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</u> 상품별 월납부액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(2월말)
 - * (현행) 단말기별 지원금과 요금제 관련 정보를 각각 제공 (개선) 단말기와 요금제 조합에 따른 월별 실납부액 정보 제공

⑤ (농축수산물)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 유도

- ① (농산물) 생산·출하안정제* 확대, 정부비축의 효율성 제고,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안정적 수급조절 기반 확충
 - * 생산안정제 : 계약농가에 평년대비 80% 가격 보장, 참여물량의 50%는 수급의무 부여출하안정제 : 계약재배시 사전 고정거래처 확보 및 고정가격 계약 유도 (농협, aT)

구 분	추진 방안
생산·출하 안정제	 ▶ 채소류 주요 5대 품목(배추·무·양파·마늘·고추)의 생산안정제 물량을 평년 생산량 대비 15%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(16년 5%→17년 8%)
	▶aT 출하안정제 품목 확대 (기존 : 배추·무 → 추가 : 양파·마늘)
ᅯᆸᆔᅕ	▶ <u>상시비축(aT) 물량 확대 (배추 2,600→3,500톤/월</u> , 무 1,000→2,000톤/월)
정부비축	▶ <u>정부비축물량의 소매지 직공급 품목 확대 (기존 : 배추무 → 추가 : 마늘)</u>
리스크 <u>관리</u>	▶ <u>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</u>

- ② (축산물) <u>축산패커 산지 전속출하를 확대('16년 38%→'17년 50%)</u> 하고 계란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**계란 GP센터 기능 대폭 강화***
 - * 선별포장(Grading&Packing)뿐 아니라 품질관리, 가격공시, 판매, 가공 기능 추가 등
- ③ (수산물) <u>꽁치·새우젓을 정부비축 예비품목으로 지정, 명절·</u> 어한기 뿐 아니라 소비자가격 급등시 방출하는 수시방출시스템 도입

7 (이자비용) 한계차주 지원 및 서민 정책자금 지원 강화

- ① 주택담보대출 연체 최소화 및 차주 권익보호 강화
 - 연체발생 이전에도 차주에게 **실직·폐업 발생시 일정기간** 원금 **상환유예**(예 : 6개월~1년)
 - 주담대 연체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, 상담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강화*
 - * 예) 최대 1년간 경매유예, 담보물 매매중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높은 기격으로 처분 지원
- ② 연체 발생 이후 신용회복절차 단계 채무자의 자활・재기 지원
 -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(예 : 10% 수준) 설정
 - * 현재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시 이자율을 원 채무의 1/2까지 경감 가능하나 고금리(30%) 채무자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부담(15%) 지속
 - 프리워크아웃의 상환유예기간을 현행 1년 → 최대 2년으로 확대
 - <u>위크아웃중에 실직·폐업</u>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적용(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)
- ③ <u>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조기에 완화^{*}하여</u> (2/4분기→3월) 신속하게 지원
 - * (미소금융) 신용등급 7등급 → 6등급 이하로 대상기준 확대 (햇살론, 새희망홀씨, 바꿔드림론) 연소득 3천만원 이하 → 3.5천만원 이하
 - <u>저소득층을 위한 주금공의 책임한정형* 디딤돌대출을 조기</u> 공급(6→5월)하고 정책효과 등에 따라 **지원대상** 확대** 추진
 - *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물로만 상환의무 한정
 - **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우선 공급 예정

图 [수수료] 주요 수수료 인하 및 운영실적 미흡 수수료 폐지

① (주요 수수료 인하)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수수료 인하

구 분	추진 방안
수능응시수수료	▶ <u>면제대상 범위를 기초수급자 →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</u>
여객공항이용료	▶ <u>기초수급자에 대해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를 50% 할인</u>
한국사능력시험료	▶ <u>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50% 인하(18,000→9,000원)</u>
차량 정기검사 수수료	▶ <u>유공자, 한부모가족, 교통사고 피해가족 할인율 확대(50→80%)</u>
국립생태원관람료	▶ <u>청소년·소인을 대상으로 1,000원 인하</u>

② (운영실적 미흡 수수료 폐지) <u>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수수료, 국제</u> 우편 소포 보관료, 승무경력증명 발급 수수료 등 58건 폐지

2.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

① 부채부담 등 영세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지원

- ① <u>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을 최장 5년→10년으로 확대</u> 하여 <u>안정적인 자금운용과 대출 상환부담 완화 유도</u>
 - 민간은행과 협약을 통해 **1,000억원 규모 장기보증상품**을 출시(3월) 하고 **보증비율 상향**(85→90%), 성실상환자 보증료 감면(1.0→0.5%)
 - *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, 5년차까지 성실상환자에 대해 6년차 이후 보증료 감면
- ②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 확대*
 - * (현행) 택배업, 대리운전업 등 \rightarrow (추가 예시) <u>자동차정비업,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추가</u>

- ③ 농축수산가구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금리를 6개월간 한시 인하*
 - * ①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자금 : 1.0%p 인하(2.0~3.0→1.0~2.0%)
 - ②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: 0.3%p 인하(1.8→1.5%)
 - ③ 수산물 수출업체 수매·운영자금 : 1.0%p 인하(2.5~3.0→1.5~2.0%)

② 상권영향평가제도 내실화 등 상생협력 확대

- ① <u>상권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</u> <u>가이드라인 마련(6월) 및 우수 이행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</u>
- ② 가맹분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가맹본부의 이익을 가맹사업자와 공유하는 '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' 육성('17년 5개 내외)
 - * 일반 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업체(이익을 조합원에 배당)에 디자인개발, 브랜드 역량강화, 홍보 등 지원
- ③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상권과 마찰없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발굴·제공하는 상생모델 확산
 - * 현행법상 도시공원, 관광지 등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나 지자체 조례로 추가 지정 가능('17.1월말 현재 166개 지자체가 조례제정)

3. 중소기업 경영애로 완화

리 금리상승, 환율변동성 확대,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애로 완화

【금리상승에 따른 애로 완화】

- ① 산ㆍ기은 등을 통한 정책자금 조기집행*을 차질없이 추진
 - * 정책자금 집행률 : ('16.1/4분기) 23%, 42.7조원 → ('17.1/4분기) 25%, 46.7조원
- ②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미매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(현재 5천억원 한도)
- ③ 중기청 **시설자금 대출기간**을 '17년말까지 **한시 확대**(8년 → 10년)

【환율변동 확대에 따른 애로 완화】

- ① **옵션형 환변동보험** 가입시 수산무역협회·aT 등 유관기관, 지자체 협업을 통해 보험료 지원(최대 95%, 업체별 3,000만원 한도)
- ② <u>환위험 관리 서비스* 이용 확대를 위해 환위험 설명회('16→17년:</u> 3→5회, 수은) 및 **1:1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**(30→50개사, 무보)
 - * 선물환거래 지원, 통화전환 옵션(대출통회를 원화·여타 외화로 전환), 환변동 보험 기입 등

【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】

- ① 국내 피소기업 실태조사(~3월)를 통해 기업애로를 파악하고, 보호 무역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(중진기금, 기업당 10억원, 금리 3.35%)
- ② 수입규제대응센터(무협) 확대개편*, 보호무역 대응 전담조직 신설 (중기청), 신흥국 기술교류센터 확대(1→8개소) 등 대응체계 확충
 - * 국별 제도·절차 등 정보제공, 현장방문 교육·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③ 방한 중국인 관광객 둔화에 따른 중소 여행업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50억원 규모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(관광기금, 1.5%)

②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

- ① <u>하도급거래 실태조사시 기술유용의 목적·형태 등 설문을</u> <u>구체화하여 기술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 강화</u>
 - * (현행) 기술자료요구여부(원사업자), 기술자료제공여부(하도급자)만을 조사 (개선)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, 제공받은 기술자료 활용형태 등 조사
- ② <u>정부·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실태를 점검하여</u> 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 방안 마련(6월)

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(Action Plan) -87개 과제-

1. 1/4분기 주요 추진과제 (37개)

[1] 2월 (9개)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■ 코레일톡 예약앱 외국어 버전 개발 착수 * 7월 출시 예정	국토부
■ 크루즈 접안가능시설 확대 * 인천항(2월), 강정항(7월), 속초항(하반기) 개장	해수부
■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* 2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	고용부
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	고용부
■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여부 합동점검	교육부
■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간 결합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 제공(동등결합상품 출시)	미래부
■ 통신요금 정보포털을 통해 상품별 월납부액 정보 제공	미래부
■ 꽁치·새우젓 정부비축 에비품목 지정 및 수시방출 시스템 도입	해수부
■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 확대 * 연구용역 실시	고용부, 중기청

[2] 3월 (28개)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 '가족과 함께하는 날' 추진방안 및 인센티브 마련 	인사처, 산업부, 여가부, 기재부, 고용부 등
■ 청탁금지법 영향업종 영세자영업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* 부가가치세(4,7월), 종합소득세(5월)	국세청
■ 호텔·콘도 객실요금 현행대비 10% 인하 시 재산세 (건물분) 30% 경감 *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조례재정 유도	행자부
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.2조원 추가 재정보강	예산실, 국토부, 중기청 등
■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 마련	고용부 등
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고용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	고용부
■ 민간과 협업하여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대상 생계비 지원방안 마련	고용부
 배달대행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확산 *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 	고용부
▪ '17년 전세임대 물량 입주자 조기 모집	국토부
■ 전세자금(1.2→1.3억원) 및 월세대출(월30→40만원) 한도 상향 *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	국토부
 전세보증반환보증 취급기관에 부동산 중개업소 추가 *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 개정 	국토부
■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(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화 등) * 기금운용계획 변경	국토부
■ 행복기숙사 추가신청학교 심사 및 배정	교육부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▪ 청년리츠의 금년도 주택 매입계획 조기 시행	국토부
■ 교습비 미게시·초과징수·과대광고 등 점검	교육부
■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에 대한 시·도 교육청 참여 확대 * 시·도 교육감 간담회 개최	교육부
■ 알뜰주유소 셀프주유소 전환 인센티브 지원 * 알뜰주유소 시설 개선 지원 지침 개정	산업부
■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 운영 확대 * 신규노선 사업자 선정	국토부
■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적용되는 현상경품 기준 완화	방통위
■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	금융위
▪ 서민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	금융위
■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10년 장기 보증상품 출시	중기청
■ 농식품부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자금 금리 인하	농식품부
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	농식품부
■ 수산물 수출업체 수매·운영자금 금리 인하	해수부
■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개시	기재부
보호무역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(중진기금)	중기청
■ 중소 여행업체 대상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(관광기금)	문체부

2. 2/4분기 주요 추진과제 (34개)

[1] 4월 (13개)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■ 청탁금지법 영향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(소상공인 운용자금 저리융자, 지역신보 만기연장 및 특레보증)	중기청
■ 봄 여행주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(4.29~5.14일)	문체부, 교육부, 국토부 등
■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* 연구용역 추진	문체부
▪ 국내 골프산업 육성 방안 마련	문체부, 기재부
■ 지방교부세·교부금 조기정산 규모 확대	기재부
■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(4.3→5만원) *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	고용부
■ 체불 방지를 위한 스마트근로감독시스템 개선	고용부
■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(300→400만원) *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	고용부
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	고용부
■ 산재근로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인하	고용부
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 완화 방안 마련	복지부
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 (10→20만원) 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	기재부
▪ 중기청 시설자금 대출기간 한시 확대(8→10년)	중기청

[2] 5월 (5개)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·파견 근로자 복지 지원 시 원금의 20% 사용 허용 검토	고용부
■ 정부 상시비축 물량 확대(배추, 무)	농식품부
■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공급	금융위
■ 국립생태원 관람료 인하	환경부
 기술유용 목적·형태 등 설문 구체화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	공정위

(3) 6월 (16개)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■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 (만25→만29세 이하)	국토부
■ 허니문 코리아 비자 신설	법무부
■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(대학인근 주택 리모델링 등) *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	국토부
■ 청년·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 확대 등	금융위
■ 소득하위 50%에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 인하 *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	복지부
■ 10년이상 장기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결손 처분	복지부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·폐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1개년 부과분 상환 유예 *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추진	교육부
■ 주차단위구획 확대 *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	국토부
■ 우체국 알뜰폰 모바일 판매	미래부
 정부비축물량의 소매지 직공급 품목 확대(마늘 추가) 	농식품부
■ 계란 GP센터 유통개선방안 마련	농식품부
■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	산업부
■ 워크아웃 중 실업·폐업 시 최대 2년간 상환유예 *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	금융위
■ 여객공항이용료 인하	국토부
■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인하	국토부
• 중소기업 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 마련	중기청 등

3. 3/4분기 주요 추진과제 (12개)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(30→40%) *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※ '17년 전체 사용액 대상 	기재부
▪ 재방문 외국인의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	법무부
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*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	고용부
■ 일반체당금 지급절차 개선 및 지급 소요기간 단축 *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	고용부
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(7월)	고용부, 국토부, 공정위 등
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(7월)	복지부
■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(7월) *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	복지부
■ 희망키움통장 (I) 월 저축액 선택폭 확대(7월)	복지부
■ 고속철도 조기 예약 시 할인혜택 제공	국토부
■ 영·유아용 카시트 렌탈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	국토부
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상한 설정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(1→2년) 	금융위
■ aT 출하안정제 품목 확대 * 7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최종 확정	농식품부

4. 4/4분기 주요 추진과제 (4개)

정책 과제	협업부처 · 기관
■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등 조치 요구권리 부여 *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	고용부
■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제한 완화	복지부
■ 교과서 가격책정 방식 개선방안 마련	교육부
■ 수능응시수수료 인하	교육부